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1월 2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임**	임** 1974-08-18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3길	무단전출
동**	동** 1989-01-25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3길	무단전출
전**	전** 1941-11-21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3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최 윤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의전화 : 02-351-500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2015년 11월 18일

